살았다	보 도 자 료			2025년	
皆州北上之人	배포일자	2021년 3 ⁻ 총	수도권매립지 종료 ② 인천평역시		
담당 택시물류과	담당자	• 택시정책팀정 • 담당자		440-3801 440-3802	
사진	■ 없음	음 🗆 있음	참고자료	□ 없음 ■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	시 보도하여 3	주시기 바랍니	다.	

인천시, '장애인콜택시' 이용대상자 확대 운영

-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중복장애인도 이용 가능 --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-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 등급 폐지 전 1급, 2급 장애인,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'장애인콜택시'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.
-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 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'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'에 제출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- 시는 지난 달 군·구를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읍·면·동장 확인공문 발급협조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.

- 의학적 판정(장애등급)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·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'서비스 종합조사'에 '이동지원 서비스'가 포함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 하게 됐다.
-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"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" 고 말했다.
- 〈붙임〉1. 장애인등록 현황 및 장애인콜택시 이용등록 현황
 - 2. 사진자료

■ 참고 : 관련 현황(2020년말 기준)

○ 우리시 장애인등록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심한 장애	심하지 않은 장애	비고
계	146,321	53,128	93,193	2019. 7.
남	87,305	31,991	55,314	장애등급제
여	59,016	21,137	37,879	폐지

○ 장애인콜택시 이용등록 현황

(단위: 명)

	구분	계	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인	1급	2급	3급	기타
	계	26,964	2,572	8,448	8,182	3,017	4,745
		(100%)	(10%)	(31%)	(30%)	(11%)	(18%)
	뇌병변	7,462	771	2,824	2,127	1,740	
	지 체	6,540	564	2,651	2,048	1,277	
계	신 장	3,283	506	146	2,631		
	시 각	2,372	283	1,842	247		
	지 적	1,994	204	923	867		
	청 각	354	30	62	262		
	기타장애	1,994	214	I	_		1,780
	65세 이상	2,965		-	_		2,965
	일시적 장애	_	_	-	_	_	-

※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(보건복지부 고시) : 장애등급제 폐지(2019. 7.) 후 등록 장애인

[※] 등급 :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

[※] 기타 장애: 간장애, 간질장애, 심장장애, 안면장애, 언어장애, 장루요루장애, 호흡기장애 등

